

수출 대행계약서

수출대행자 ○○주식회사 대표이사 ○○○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대행위탁자 ○○주식회사 대표이사 ○○○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아래와 같이 수출 대행계약을 체결한다.

【 제 1 조 】 수출대행 물품의 규격, 수량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.

품 명	규 격	수 량	단 가	금 액

【 제 2 조 】 “갑”은 “을”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내도된 신용장을 양도받거나, “을”이 “갑” 명의로 개설받은 신용장에 의하여 제1조의 물품을 단순 수출대행하며, “을”은 대행 수수료조로 신용장 네고 금액의 \$당 ○○○원을 “갑”에게 지불한다.

【 제 3 조 】 “을”의 요청에 의하여 “갑” 명의로 원자재 내국 신용장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“을”과 원자재공급자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대금결제는 제1조의 수출물품이 선적되어 매입된 자금으로 결제키로 하고 별도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【 제 4 조 】 “을”이 “갑”을 통하여 확보한 수출용원자재는 본 수출품 제조 외에 타에 전용할 수 없으며, 신용장 상의 선적기일 내에 충분히 선적할 수 있도록 “을”의 책임 하에 선박수배, 검사, 통관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【 제 5 조 】 “을”은 신용장상에 명시된 제 조건 및 “을”과 수입자간에 수출계약조건에 따라 충실하게 물품을 제조 선적하여야 하며, 본 수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공과금 및 각종 경비와 수수료를 부담한다.

【 제 6 조 】 “갑”은 수출완료 후 수입상으로부터 제기되는 여하한 Claim(대금결제거절, 인도지연 및 수출불이행 등 모든 청구를 포함) 및 기타 본 수출로부터 야기되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하여도 일체의 책임을 부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을 “을”의 부담으로 한다. 또한 본건 수출에서 편의상 “갑”의 명의로 관서 및 은행 등에 제출되는 각서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의 이행도 일체 “을”이 부담한다.

【 제 7 조 】 “갑”은 수출대전을 추심하는 대로 전 각조에 명시된 “을”이 부담할 금액과 수출용원자재 대금을 공제한 차액을 “을”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예기치 않은 Claim발생 등 사태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동안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지불한 금액상당 이상의 어음을 예치시키거나 “을”에 지불할 금액 중 일부를 갑에게 예치시키거나 기설정된 담보물을 “갑”에게 유치시켜야 한다.

【 제 8 조 】 본 수출로 인한 수출실적에 따르는 정부의 제반특혜는 “갑”이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.

【 제 9 조 】 “갑”, “을” 공히 본 계약을 위약하였을 경우, 위약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【 제10조 】 본 계약조문상의 해석에 “갑”, “을”간 이견이 있을 시는 “갑”의 해석이 우선한다.

【 제11조 】 본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 시는 “갑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로 한다.

【 제12조 】 이상 제 조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, 상관습에 따른다.

【 제13조 】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,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.

- 1.
- 2.
- 3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, 서명 날인 후 "갑"과 "을"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계약일자 : 20 년 월 일

(갑) 주 소 :
회 사 명 :
대 표 자 : ○ ○ ○ (인)
연 락 처 :

(을) 주 소 :
회 사 명 :
대 표 자 : ○ ○ ○ (인)
연 락 처 :